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23. 1. 10.(화) ~ 1. 16.(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 모집내용

연번	사업명	모집인원(명)
모집 계		910
1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50
2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서비스	100
3	부모코칭 프로그램 '당당한 맘, 편편한 맘'	30
4	노인정서치유서비스 "마음건강 지킴이"	120
5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20
6	약물도박중독가정 기능회복 토탈케어서비스	10
7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10
8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200
9	노인운동서비스 "황금빛 뇌(腦)인생"	150
10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소중한 가족, 통하는 가족'	10
11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200
12	정신건강증진서비스	10

※ 신청인원 및 예산상황에 따라 모집인원 변동 가능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1. 신분증 , 건강보험증 사본,
(필요시)건강보험납입영수증이나 납입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 : 건강보험관리공단 ☎ 1577-1000
- 2.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3.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4.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5.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7.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추가서류 : “서비스별 구비서류 참고”(6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은 예외적으로 1년(상세내용 별첨)

◎ 가구원 수 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서비스이용자를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아동의 경우 형제자매 포함)
- 서비스이용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또는 지역)인 경우 서비스이용자의 주민등록 표에 기재된 자로만 가구원으로 산정하고 소득조사 실시
※ 단,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이나,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 서비스이용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수 포함(행복e음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원부 조회불가)

◎ 서비스 이용제한

- 1인당 동시에 1개의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
※ 2023년 1월 종료자의 경우 1월 신규서비스 신청가능
2월 종료 예정자부터는 기존 서비스 정상 종료 혹은 중지 신청 후 신규 신청 가능
※ 단, 1가구 2인 이상의 서비스 이용은 가능
- 유사 중복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중복수혜 불가(동시 이용만 불가)
- 타 시군구 전출 시 자동중지 처리
- 2개월 이상 미사용 시 서비스 이용자격 상실

◎ 소득조사

- 원칙적으로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예외)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자가 건강보험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서비스 대상 가구의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신청일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에 산정(필요시 신청자가 건강보험료소명자료 제출)
- (조사생략)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소득조사를 통한 행정 비효율을 막기 위해 소득조사 미실시(행복e음에서 확인)
- (해외체류) 해외체류로 건강보험 부과가 중지된 경우 월급명세서로 산정하고, 월급명세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중지직전 12개월 평균하여 산정
- (직장가입자 휴직)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자의 소득을 0원으로 처리
- (보험료 합산)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해당 가구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확정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B”낮은 건강보험료×0.5

사업별 주요내용

1.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구분	내용
사업내용	심리행동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만18세 이하
서비스 기간	12개월(재판정 1회)
중복지원 불가사업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소중한 가족, 통하는 가족'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Wee클래스 상담지원
서비스 가격	월 18만원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최저금액 ~ 상한금액 <u>기관자율 차등적용</u> A등급 : 18,000원 ~ 5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 : 36,000원 ~ 72,000원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C등급 : 54,000원 ~ 90,000원 (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

2.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구분	내용
사업내용	교육환경변화, 가족해체 증가 등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만 7세 이상~13세 이하
서비스 기간	12개월(재판정 1회)
중복지원 불가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소중한 가족, 통하는 가족'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Wee클래스 상담지원
서비스 가격	월 20만원
본인부담금	A등급 : 20,000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 : 40,000원(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3. 아동·청소년 바른자세 교정 통합운동서비스

구분	내용
사업내용	체계적인 운동 및 진단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우뇌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운동능력·인지·학습·정서문제를 통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해 밸런스를 유지하는 신체활동 지원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170%이하, 만 4세 이상~13세 이하
서비스 기간	12개월(재판정 불가)
중복지원 불가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사업
서비스 가격	월 16만원
본인부담금	A등급 : 16,000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 : 32,000원(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C등급 : 48,000원(중위소득 120%초과~160%이하) D등급 : 64,000원(중위소득 160%초과)

4.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구분	내용
사업내용	유아기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과 부모간의 상호교감과 유대감 형성을 지원하고, 양육 부담 감소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만 1세 이상~6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서비스 기간	12개월(재판정 불가)
중복지원 불가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부모코칭 프로그램 '당당한 맘, 편편한 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소중한 가족, 통하는 가족',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Wee클래스 상담지원,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
서비스 가격	월 10만원
본인부담금	A등급 : 10,000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 : 20,000원(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5. 부모코칭 프로그램 당당한 맘, 편편(Fun-Fun)한 맘

구분	내용
사업내용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와 자녀를 위한 진로코칭을 통한 현명한 부모 양성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대구광역시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서비스 기간	12개월(재판정 불가)
중복지원 불가사업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소중한 가족, 통하는 가족',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
서비스 가격	월 16만원
본인부담금	A등급 : 16,000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 : 32,000원(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C등급 : 48,000원(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6.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구분	내용
사업내용	장애아동의 특수 휠체어 및 자세유지기구의 구입 및 리폼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특수 장애아동의 정상적 신체발달 지원
신청대상	소득기준 없음, 만 24세 이하 장애아동·청소년
서비스 기간	12개월(재판정 5회)
서비스 가격	월 12만원(반기별 결제)
본인부담금	1등급 : 12,000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 : 24,000원(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3등급 : 36,000원(중위소득 140%초과)

7.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구분	내용
사업내용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 서비스 가격 등급 확인을 위해 기초연금자도 소득 조사 필요
서비스 기간	12개월(재판정 1회)
중복지원 불가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 노인장기요양급여(시설, 재가) 이용자
서비스 가격	월 16만8천원
본인부담금	A등급 : 16,800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 : 25,200원(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C등급 : 33,600원(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8. 정신건강증진서비스

구분	내용
사업내용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능력개발에 대한 코칭을 통하여 정신장애인 본인과 가족보호체계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자 함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만 15세 이상
서비스 기간	12개월(재판정 1회)
서비스 가격	월 22만원
본인부담금	20,000원

9. 노인정서치유서비스 “마음건강 지킴이”

구분	내용
사업내용	동세대간 교류와 어울림을 통한 상호지원 및 지지체계 형성으로 삶에 대한 활력 증진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 노인
서비스 기간	12개월(재판정 불가)
중복지원 불가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 노인장기요양급여(시설, 재가) 이용자
서비스 가격	월 12만원
본인부담금	12,000원

10. 노인 운동서비스 “황금빛 뇌(腦)인생”

구분	내용
사업내용	노인의 신체·인지향상 운동프로그램을 통한 치매 예방 및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 노인
서비스 기간	12개월(재판정 불가)
중복지원 불가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 노인장기요양급여(시설, 재가) 이용자
서비스 가격	월 14만원
본인부담금	14,000원

11. 약물도박중독가정 기능회복 토탈케어서비스

구분	내용
사업내용	약물 및 도박 등 각종 중독의 위험을 가진 세대에 대한 위험요소를 조기발견하고, 치료를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생활 지원
신청대상	소득기준 없음, 만 12세 이상
서비스 기간	12개월(재판정 2회)
서비스 가격	월 22만원
본인부담금	A등급 : 22,000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 : 44,000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12.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프로그램 '소중한 가족, 통하는 가족'

구분	내용
사업내용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족상담 프로그램 제공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170%이하, 대구 거주 만 7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 중 가족관계 회복의 욕구가 있는 가족
서비스 기간	6개월(재판정 불가)
중복지원 불가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부모코칭 프로그램 '당당한 맘, 편편한 맘',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Wee클래스 상담지원,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서비스 가격	월 25만원
본인부담금	A등급 : 25,000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 : 50,000원(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C등급 : 75,000원(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D등급 : 100,000원(중위소득 140%초과~160%이하) E등급 : 125,000원(중위소득 160%초과~170%이하)

[공통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첫만남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는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 이혼)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사유)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제출처	[]보육료지원 • 유아학비지원 * 부모급여(보육료) 지원 포함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 어린이집(0~2세) 기본([]장애 []다문화) [] 어린이집(0~2세) 연장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3~5세)([]장애 []다문화)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기본([]장애 []다문화) [] 어린이집(0~2세) 연장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3~5세)([]장애 []다문화)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기본([]장애 []다문화) [] 어린이집(0~2세) 연장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3~5세)([]장애 []다문화)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자격을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0-2세)기본보육 자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만 0-1세 아동은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으로, 어린이집(0-2세)로 신청하면 됩니다. * 만 0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자격 신청 시 부모급여 차액이 지급되므로 반드시 계좌정보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보장기관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다담세액결제(D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가사간병방문지원		지원대상자 신청요건(1개 선택)				서비스시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 월 24시간 [] 조손가정 []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월 27시간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				
	[]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장애 서비스	지원대상자	장애유형	[] 뇌병변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 (영유아)		
			장애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언어재활 [] 청능재활 [] 미술심리재활 [] 음악재활 [] 행동재활 [] 놀이심리재활 [] 재활심리 [] 감각발달재활 [] 운동발달재활 [] 심리운동 [] 기타()					
언어발달 지원 (비장애아동)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언어발달진단 [] 언어재활 [] 기타 ()					
	장애유형 (부모 또는 조부모)	[] 뇌병변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 부 [] 모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영유아)	장애정 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 지원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장애 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원유형	[] 주간활동서비스 ([] 단축형 [] 기본형 [] 확장형) * 기본형/확장형 이용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차감됩니다. [] 방과후활동서비스				
[]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신청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주양육자 신청가능		
	지원대상자						

[]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자			
	긴급활동지원	[] 해당 (* 신규신청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활동지원급여	신청유형	[] 신규신청 [] 변경신청 [] 갱신신청 [] 노인장기요양전환자 지원	
		변경신청 사유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장애상태의 변화	[] 학교생활
			[] 직장생활	[] 취약가구
			[] 독거(1인)가구 (19세 이상)	[] 거주지 이전
[]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 조손가정 (19세 미만)	
[] 한부모가정 (19세 미만)	[] 기타			
특별지원급여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일시부재([]결혼 []사망 []출산 []입원 []지역사회보호자)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자	출생정보	[] 국외출생 [] 복수국적	
	지급방식	[] 바우처(원칙) [] 현금(시설보호 아동 등)		
	카드정보 (국민행복카드)	보호자(카드 보유자)		
		[] BC(은행) [] 삼성 [] 롯데 [] KB국민 [] 신한	* 유의사항 - 신규신청자의 경우, 발급 희망 카드사 및 회원 은행사(BC카드를 선택한 경우)를 선택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보 건 소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 단태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단태아([] 인력1명 [] 인력2명) [] 삼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다태아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 자택 [] 기타		
보건 소· 주민 센터	지원대상자			
	지원 유형 (중복 체크 가능, 조제분유는 변경 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 가능)	기본지원대상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예외지원대상 (지자체 자체 사업)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p>1. 개인정보 활용 목적</p> <p>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p> <p>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p> <p>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보육료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p> <p>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p> <p>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p>		[]

유의 사항		확인 (√ 체크)
<p>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p> <p>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p>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발급 대상자	대상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① 징구 ② 미징구 ※ 만14세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발급	재발급사유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훼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카드 수령지	수령인	<input type="checkbox"/> 발급대상자 <input type="checkbox"/> 보호자(가족 등)	대상자와의 관계 : ※ 수령자가 보호자인 경우 기재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수령지	① 자택 ② 직장 ③ 읍.면.동주민센터 ※ 자택, 직장, 읍.면.동주민센터 중 희망 수령지를 체크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자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전화번호	
	직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전화번호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대상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 신청대상: 만 14세 미만 아동, 만 75세 이상 노인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돌봄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대상자

-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 서비스 대상자(본인) 명의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 이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카드발급 신청인 (지원대상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법정대리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연락처	

상기 본인(법정대리인)은 카드 발급 신청인을 대리하여 국민행복카드의 발급 및 동 카드의 사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안내 및 유의 사항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인이 만14세미만 아동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카드 발급 신청인란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소개 및 발급 안내 (서비스 이용자용)

☑ 「국민행복카드」란?

-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카드

☞ 전자이용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다만, 희망e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향후 전자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카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가까운 은행, 우체국 등 직원에게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요청하세요

☞ 대상자가 만14-19세미만인 경우,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 카드사별로 신청 가능자(법정대리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과 본인 동행 등), 구비서류 필요여부 등이 다르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준을 문의하세요

☞ 대상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

①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②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때 카드사 콜센터 발급상담 전화를 함께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문의 및 정보확인

- (전화)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단축4번)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인터넷)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www.voucher.go.kr)